

마을 養苗 問題

농림신문社 專務理事 李 在 石

目 次

1. 前 言
2. 마을 養苗의 所得分析
3. 林業과 마을 養苗
4. 結 言

1. 前 言

마을 養苗의 歷史는 實은 相當히 오래 되었다. 1959年度에 燃料林造成 事業이 始作되면서부터 部落山林契 養苗라는 것이 생겼다. 當時 燃料林은 部落山林契單位로 造成할때다. 이 燃料林造成 事業의 主樹種인 아까시아 苗木을 自己部落所要 苗木은 自己部落에서 生産함으로서 苗木生産過程을 通하여 苗木生産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다는 것을 部落全體山林契員에게 注入하여 燃料林造成時 苗木에 對한 愛着心을 갖게하여 燃料林造成 事業을 成功的으로 이끌어 가자는데 本來의 뜻이 있었든 것이다.

그러나 本來當局에서 意圖하는 것과는 달리部

落에서 共同精神의 缺如乃至는 共同所有 共同管理에 對하여 部落民들이 이 養苗에 對한 魅力을 갖지 못하여 所期의 成果를 거두지 못함으로서 單位面積當 生産量이 基準值를 越等히 下廻하여 山林契마다 養苗忌避 現象이 이려났든 것이다.

그래서 各部落마다 이름은 山林契 養苗고 그背後에 個人이 施業을 하여 이른바 代理 養苗가 公共然하게 盛行되었었다.

其後 不得已 山林契 養苗는 繼續 끌고 갈수가 없어 生産體系를 現實化 하기 爲하여 山林契 養苗指定分을 市郡山林組合에서 承繼한 것이 오늘날 山林組合 養苗의 前身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던中 1972年度에 治山綠化 10個年 計劃을 樹立할 무렵 從前의 山林契 養苗의 이름을 바꾸어서 마을 養苗라고 改稱하고 1972年度 山林組合에서 生産途中인 苗木을 마을에서 引受施業함으로서 다시 마을 養苗가 새로 始作된 셈이 된다.

다음 ①表에서 우리는 마을 養苗가 始作되면서부터 1976年度까지 生産主體別 生産量을 보면 指定量對 生産量은 83%線에 머물렀다 할지라도 마을 養苗의 比重이 全體量의 50%에 相當한量을

① 最近 5 個年間 年度別 主體別 成苗 生産量表 單位: 千本

| 年度別 | 마을 | | | 山 組 | | | 企 業 | | | 計 | | |
|-----|----------|---------|------|---------|---------|-------|---------|----------|-------|----------|----------|-------|
| | 指定量 | 生産量 | 比率 | 指定量 | 生産量 | 比率 | 指定量 | 生産量 | 比率 | 指定量 | 生産量 | 比率 |
| 72 | 85,849 | 60,000 | 69.7 | | | | 184,702 | 135,895 | 73.5 | 270,551 | 195,895 | 72.3 |
| 73 | 140,900 | 86,364 | 60.9 | — | 61,790 | | 168,620 | 188,431 | 111.2 | 309,520 | 336,585 | 108.7 |
| 74 | 232,300 | 192,968 | 83.1 | 162,740 | 130,343 | 79.7 | 167,380 | 226,486 | 135.3 | 562,420 | 549,797 | 97.8 |
| 75 | 230,545 | 207,585 | 90.0 | 107,050 | 113,335 | 105.6 | 183,850 | 233,529 | 127.1 | 521,445 | 554,449 | 106.3 |
| 76 | 323,556 | 285,695 | 88.2 | 154,884 | 152,648 | 98.7 | 194,250 | 240,460 | 123.7 | 672,700 | 678,803 | 100.8 |
| 總計 | 1013,160 | 832,612 | 82.2 | 424,674 | 458,116 | 94.2 | 898,802 | 1024,801 | 114.0 | 2336,636 | 2315,529 | 99.1 |

生産供給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마을養苗가 從前에 마을養苗와 性格이 다른 것은 山林契養苗의 目的은 自己部落燃料林造成用苗木을 自己部落에서 生産한다는 趣旨에 局限되었으나 只今の 마을養苗는 勿論 前者의 뜻도 있겠지만 마을 所得事業으로 登場해서 1973年 11月 16日에 山林法施行規則 第17條를 改正하여 從前에는 生産販賣는 할수 없던 마을과 學校도 이것이 可能하도록 길을 더 놓았다는데 山林政策 或은 種苗行政에 重要問題點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本論은 마을養苗가 果然 所得事業으로서 適合한 事業인가 하는 것을 分析檢討하고 이 마을養苗가 가지고온 副作用이 全體林業問題에 미치는 影響等を 밝혀보자는데 그 뜻이 있다.

2. 마을養苗의 所得分析

學校에서 林學을 專攻했거나 山林關係 機關에서 相當히 오랜經驗을 쌓고 相當한 職位까지 있는 사람들이 마을 養苗所得을 說明하는데 B/C率 (收益對生産費用)이 150~160%라고 報告하는 것을 가끔 듣는다.

150~160%의 B/C率은 다시 말하면 50~60%의 企業利益 또는 所得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筆者는 이런 質問을 해 왔다.

養苗라는 것이 一般的으로 收支가 없거나 적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B/C率을 낸 根據를 說明해 달라고 했다.

이러한 質問에 對答하기를 마을養苗는 部落에서 共同作業을 했기 때문에 勞賃을 計算하지 않고 B/C率을 냈다는 것이었다.

勿論 企業利益과 純所得과는 概念上的 差異가 없는 것은 아니다.

一般農業에서 所得은 自家勞働力은 損費로 計算하지 않는 것도 있기는 하나 적어도 이 養苗가 企業利益을 目標로 해서 經營될때는 勞力動員이라 해서 勞賃을 生産費로 計上치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마을養苗의 所得率이 높다는 것은 宣傳하기는 좋은 資料가 될지 모르지만 이것

은 잘못된 生覺이다.

그理由는 只今 우리나라가 經濟發展과 더불어 2~3次 產業이 急進的으로 發展함에 따라 農業人口가 2~3次 產業으로 漸次 옮겨가고 있어 農村에서의 勞動力 不足은 極에 達하고 있다.

그래서 農山村의 剩餘勞動力은 거의 없다.

다라서 마을養苗勞力動員에 動員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勞賃을 받을 雇傭機會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苗圃에 動員된 人夫의 勞賃을 計上하지 않는 것은 原價計算上 矛盾이 있다.

實地로 苗木生産에 있어서 原價의 50~60%를 차지하는 것이 이 勞賃인데 이러한 勞賃을 計上하지 않고 50~60%의 所得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結局 企業利益이 全然 없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以上에서 莫然한 理論을 避하고 좀 具體的으로 마을養苗 純所得을 마을養苗가 本軌道에 올랐다고 하는 1975年度 養苗施業狀況을 分析을해 봄으로서 理解를 빨리 할 수 있다.

1975年度 全國的으로 마을養苗한 實態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75年度 마을養苗狀況

- (1) 成苗總生産量 207,000千本
- (2) 同上苗木代總額 2,660,000千圓
- (3) 同上企業利益 212,000千圓
- (4) 施業 總部落數 3,088部落
- (5) 戶當 純所得

- ① 100戶部落 戶當 687圓
 - ② 50戶部落 戶當 1,374圓
- } 平均

以上에서와 같이 75年度에 마을養苗를한 部落의 戶當平均企業利益은 1,030圓 未滿이다.

一年農事를 해서 戶當 純所得이 1,030圓이라면 하루 農村男子人夫賃 日當 1,500~2,000圓에도 未達된다.

이것을 가지고 所得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問題가 되는 것은 企業利益 計算上의 方法이 問題인데 前記와 같은 方法은 養苗實態가 單位面積當 規格苗가 正常으로 生産되었을 때 이야기다. 그러나 筆者가 分析해 본바 다음表 ②와 같다.

表 ②

1975年度 마을養苗單位面積當 施業狀況表

| 木樹種別 | 苗令別 | 床面積 | 生産本數 | m ² 當得苗本數 | m ² 當得苗基準本數 | 令土比率 | 備 考 |
|-------|-----------------|----------------|---------|----------------------|------------------------|---------|-----|
| | | m ² | 千本 | (A) | (B) | (A:B) % | |
| 밤 나무 | | 720,677 | 10,823 | 15 | 14 | 107 | |
| 은 사 시 | C $\frac{1}{T}$ | 274,339 | 1,212 | 4 | 8 | 50 | |
| 포 푸 라 | C $\frac{1}{T}$ | 2,157,369 | 12,509 | 6 | 8 | 75 | |
| 아까시아 | 1-0 | 548,372 | 31,901 | 58 | 64 | 90 | |
| 쪽 싸 리 | 1-0 | 1,131,425 | 107,668 | 95 | 120 | 79 | |
| 리 기 다 | 1-1 | 445,983 | 21,950 | 49 | 77 | 63 | |
| 計 | | 5,278,165 | 186,063 | | | 77 | |

重要樹種別로 單位面積當(床面積 1m²當) 實地生産量과 價格査定上의 基準生産本數間에는 큰 것은 50% 적은것은 79% 平均 基準値에 77%밖에 生産이 되지 않았다.

여기에서 確實히 할 것은 100이 生産되어야 할 施業地에서 77밖에 生産이 되지 않아 23%가 結果的으로 損失을 가지고 왔다.

그러나 苗木價格總原價에서 企業利益 8%와 마을에서 支給하지 않는 金利·公課金을 原價에 計算함으로 이를 다 합하여 9.4%를 다 企業利益으로 봐준다 해도 原價에서 實企業利益은 16.8%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基準本數生産未達로 인한 損失率23%에서 實企業利益率 16.8%를 控除하여도 正確하게 6.2%의 損失을 가지고 왔다. 이것으로 보아 결코 마을 養苗는 어느 特殊한 部落에서는 多少의 利潤이 있었을런지 몰라도 全國平均을 하면 所得이 없는 것으로 分析된다.

3. 林業과 마을 養苗

前項에서 우리는 마을養苗가 마을所得事業으로 不適合한 것임을 指摘했다.

이것보다 더욱 重要的한 것은 種苗의 質 保證乃至는 品種管理面에서 더욱 問題다.

先進林業外國에서도 山林種苗의 品質問題 때문에 種苗法이 制定되어 嚴格하게 生産者資格으로부터 規格 品質等을 規制하고 있다.

一般農作物의 品種을 잘못 選擇한 것은 一年或은 2年農事를 失敗하고 말지마는 山林에서不

良種苗를 選擇했을 경우 百年林業을 망치고마는 結果를 招來하기 때문에 山林種苗는 品種管理에 力點을 두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1962年度 山林法 制定當時에 山林種苗를 生産하는 者는 一定한 資格規程을 두었고 販賣를 하는 山林種苗는 檢査制度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1973年度 山林法施行規則 第17條를 改正하여 마을과 學校도 山林種苗生産販賣가 可能토록 하였다.

換言하면 마을과 學校도 山林種苗生産販賣가 可能하도록 山林法施行規則을 改正한 것은 全國에 마을이 아닌곳이 없고 學校가 없는 곳이 없다. 여기에서 다 養苗가 可能하다면 一種의 國民皆養苗制度의 길을 더 놓은 結果가 된다.

씨를 받고 苗를 기르는 基礎的이고 專門的이고 選擇的이어야 할 種苗生産業을 部落共同作業으로 다루게 했다는 事實은 한마디로 말해서 山林種苗政策의 後退를 意味한다.

특히 여기서 注意해야 할 點은 마을에서 많이 生産하고 있는 밤나무苗木의 경우를 例를 들어 볼 수 있다. 모든 樹種이 다 같지마는 밤나무처럼 品種區分을 確實해야 할 것도 없는 것 같다.

첫째로 耐寒性問題 結果習性問題 授粉配列問題等 技術的으로 檢討되어야 할 點이 너무 많아서 品種區分이 確實히 되어야 하는데 마을共同으로 다루다 보니 이것이 嚴格하지 못함으로 實地造林地에서 많은 問題點이 나오고 있다. 耐寒性을 檢討한 品種을 供給하지 못함으로서 造林地에서 凍害를 입는 것이 있는가 하면 授粉樹配列이 잘되지 못 으로서 심은 後에 結實이 極히

不良하다든가 하는 문제가 長期間 繼續된다. 비단 밤나무 뿐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은수원사시나무같은 것도 다 같은 은수원사시나무 같아도 사시나무系統과 백양系統이 각기 달라서 造林地에서 그 成長이 크게 다르다.

또 種子도 다 같은 種子같아도 秀型木이나 採種林에서 딴 種子와 一般林地에서 딴 種子는 遺傳形質이 根本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것을 埋案하지 않고 專門家가 아니고 技術者가 아니라도 아무나 할 수 있다는 思考方式은 林業에서는 큰 禁物이라고 할 수 있다.

한번 잘못 選擇했거나 育苗한 苗木은 最少限 몇십년을 두고 影響을 하기 때문에 優良種苗의 生産이 林業의 成敗를 가름할만큼 重要的 것임을 알아야 하겠다.

4. 結 言

以上에서 마을養苗가 그 收支面에서 所得事業으로 策定할만한 것이 못된다는 것을 알았다.

또 이 나라 林業將來를 爲하여 種苗事業이 共同作業으로 다루워져서도 안되겠다는 結論을 얻었다.

오늘날 마을養苗가 마을사람들의 愛林思想을 고취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나 現今의 造林이나 育成이 愛林思想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事實을 直視하여야 한다.

造林이나 育林이 어디까지나 經濟行爲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市中이나 社會資本은 經濟적으로 利潤이 큰事業에 投資하려고 하기 때문에 最少限 林業이 他産業과 比較하여 投資對收入의 比率이 적어도 같거나 보다 크지 않을때 林業으로 遊休資金은 끌어들이기 어렵다고 봐야한다.

그래서 世界各國이 山林에 經濟的인 助成政策을 講究하고 있는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선 마을에서 山林事業用 苗木을 生産販賣해서는 안되겠다.

1973年度 第1次年度 治山綠化 10個年 計劃事業이 끝나고 大學教授評價團의 調查報告書를 봐도 마을養苗는 마을自體造林에 所要되는 苗木만 生産토록 하고 漸次 養苗는 專門技術者에게 맡겨야 된다고 했다. 이 報告書는 現實을 正確하게 보고 評價分析한 것으로 안다.

마을自體造林에 所要되는 少量으로서 林木의 遺傳形質과 關係없는 養苗를하여 山林事業을 理解시키는데 끝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爲하여는 種苗行政이 生産主體間에 養苗所得分配에 心血을 기울일 것이 아니라 보다 낡은 優良形質의 種苗를 生産하는 方法을 講究해야 된다.

또 制度的으로 現行山林法施行規則 第17條를 1973年度에 改正한 以前으로 環元하여 마을과學校가 山林種苗를 生産販賣를 할 수 있는 資格者로 規定하지 말아야 될줄 믿는다.